

# 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환/경/제/도

## 1.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

〈편집부〉

###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주요 내용

- **추진배경** : 수출입 허가대상이 아닌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 및 수입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제도 정비
- **주요내용**
  - ①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 외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신고제 도입
  - ② 수입폐기물의 자가처리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의 위탁처리 의무화
  - ③ 수입폐기물의 국내 운반·처리시 전자인계·인수서 작성 의무화
  - ④ 수입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
- **시행일** : 2008. 8. 4

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(☎ 02-2110-6920)

## 2. 자연환경지구내 상업시설 입지 거리제한 폐지

### 자연공원법 개정 주요

- **계정이유** : 자연환경지구내 상업시설 입지거리제한 폐지 등
- **주요내용**

공원자연환경지구안에 기념품판매점·약국·식품접객업소(유흥주점 제외)·미용업소·목욕장·유기장 등의 상업시설 상호간의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
- **시행일** : 2008. 9. 22

환경부 자연자원과 (☎ 02-2110-6753)



### 3.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 시행

#### 환경측정 분석사 제도의 주요내용

- **추진배경** : 환경측정분석분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화된 시험분석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으로 환경측정분석사가 필요
- **주요내용**
  - ① 환경측정 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종목
  - ②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
  - ③ 환경측정 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지정
- **시행일** : 2008. 10. 4(환경분야시험·검사등에관한법률은 '07. 10. 4일 시행되었으나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는 '08. 10. 4일 시행됨)

환경부 환경전략실(☎ 02-2110-6724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시행일)
			관계부서
①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 외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신고제 도입</li> <li>○ 수입폐기물의 자가처리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의 위탁처리 의무화</li> <li>○ 수입폐기물의 국내 운반·처리시 전자인계·인수서 작성 의무화</li> <li>○ 수입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</li> </ul> <p>※ <a href="http://www.me.go.kr">http://www.me.go.kr</a>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 입법예고 (제2006-265호, 2006. 9. 21)</p>	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, 제24조의3 ('08. 8. 4)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(02-2110-6920)
② 공원자연환경 지구내 상업시설 입지 거리제한 규정 폐지	○ 공원자연 환경지구안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중 상업시설(유흥주점 제외)은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과의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입지가능	○ 입지제한 거리규정 폐지	자연공원법 시행령 ('08. 9. 22)  환경부 자연자원과 (02-2110-6753)



구분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시행일)
			관계부서
<b>3</b> 일회용품 규제 개선 <b>1</b> 식품접객업, 집단급식소	○ 사용억제품목 - 1회용컵 (종이컵 · 합성수지컵 · 금속박컵 등)	○ 식품접객업,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품목 중 1회용 종이컵은 사용이 가능 ※ 합성수지컵 · 금속박컵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규제대상임	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(‘08. 7. 1 예정)
<b>2</b> 식품제조·가공업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 - 대규모 점포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<b>3</b> 식품접객업, 집단급식소	○ 사용억제품목 - 1회용 합성수지용기(도시락용에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) ○ 사용억제품목 - 음식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하여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	○ 식품제조·가공업,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소에서는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가능 ○ 식품접객업소,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 등에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가능	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(02-2110-6917)
<b>4</b> 대규모점포, 도·소매업	○ 무상제공금지 - 1회용 봉투·쇼핑백	○ 대규모점포, 도·소매업소에서 종이쇼핑백은 사용 가능 ※ 종이쇼핑백 이외 1회용 봉투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규제대상임 ※ <a href="http://www.me.go.kr">http://www.me.go.kr</a> (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)	
<b>4</b> 폐기물 종이 인계서를 전자인계서로 대체	○ 사업장 일반폐기물 인계인수시 종이인계서 사용 ○ 운반중 종이인계서 휴대	○ 사업장 일반폐기물 인계인수시 전자인계서 사용 ○ 의료폐기물은 전자태크 사용 ○ 운반중 인계번호 휴대 <a href="http://www.allbaro.or.kr">http://www.allbaro.or.kr</a>	폐기물관리법 (‘08. 8. 4)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(02-2110-6936)
<b>5</b> 폐석면 관리제도 강화	○ 석면의 제조·가공 시 또는 공작물·건축물의 제거 시 발생하는 것(슬레이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) ○ 처리방법은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	○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%이상 함유된 제품·설비(뿔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) 등의 해체·제거 시 발생하는 것 ○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기존대로 처리 ○ 나머지는 지정폐기물매립장에 매립 ※ <a href="http://www.me.go.kr">http://www.me.go.kr</a> (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)	폐기물관리법 (‘08. 7. 1)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(02-2110-6943)
<b>6</b>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예치제도 폐지	○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 및 재활용 신고는 영업시작전까지 다음 각호 중 하나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함. -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- 폐기물 처리 보증보험 가입 -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예치	○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 및 재활용 신고는 영업시작전까지 다음 각호 중 하나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함 -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- 폐기물 처리 보증보험 가입 ※ <a href="http://www.me.go.kr">http://www.me.go.kr</a> (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)	폐기물관리법 (‘08. 8. 4)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(02-2110-6946)

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시행일)
			관계부서
7 석분토 보관기간 연장	○ 채석허가를 받은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석분토는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음	○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적지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석분토는 시·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있음  ※ <a href="http://www.me.go.kr">http://www.me.go.kr</a> (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)	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(’08. 8. 4예정) 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(02-2110-6941)
8 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준수사항, 행정처분, 과징금 시행	○ 재활용신고자에 대해서는 준수사항, 행정처분, 과징금 부과의 제도가 없었음	○ 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을 재활용 할 때 지켜야할 주요 내용(준수사항)이 폐기물관리법에 명문화 됨 - 계약서 작성 의무, 재위탁 금지, 처리기간 준수, 폐기물 차량 이용, 재활용신고증명서 대여 금지, 허용보관량 초과금지, 휴·폐업 시 수집·운반증 반납, 장부의 기록·보존, 보고서 제출 등  ○ 재활용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의 부과 가능해짐 - 경고, 사업정지(재활용금지) 1월, 2월, 3월, 6월, 재활용시설폐쇄 등  ○ 재활용신고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가능해짐 - 1천만원, 2천만원, 3천만원, 5천만원  ※ <a href="http://www.me.go.kr">http://www.me.go.kr</a> (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)	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(’08. 8. 4)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(02-2110-6951)
9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	<신 규>	○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 외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신고제 도입  ○ 수입폐기물의 자가처리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의 위탁처리 의무화  ○ 수입폐기물의 국내 운반·처리시 전자인계·인수서 작성 의무화  ○ 수입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  ※ <a href="http://www.me.go.kr">http://www.me.go.kr</a>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 입법예고(제2006-265호, 2006. 9. 21)	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, 제24조의3 (’08. 8. 4)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(02-2110-6920)

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시행일)
			관계부서
10 환경측정 분석사 제도 시행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검정 응시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</li> <li>- 환경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</li> <li>-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</li> </ul> </li> <li>○ 검정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기환경측정분야</li> <li>- 수질환경측정분야</li> </ul> </li> <li>○ 환경측정 검정기관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검정기관 운영계획서, 재정운영 계획서</li> <li>-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</li> <li>- 검정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등을 확인 후 지정</li> </ul> </li> <li>○ 시행초기에는 수요가 높은 대기와 수질 등 2종류만 실시하고 향후 수요를 고려하여 기타 분야로 확대 실시</li> <li>○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분야의 공정시험 기준에 따른 시험·기기분석방법이 포함</li> </ul> </li> </ul>	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(08. 10. 4)
			환경부 환경전략실 (02-2110-6724)